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향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331

발의연월일: 2020. 9. 29.

발 의 자:양향자·김민철·홍성국

황운하 • 전혜숙 • 서영석

김경만 • 이성만 • 박성준

강준현 • 이해식 • 이수진

김승원 · 오영환 · 김회재

송재호 · 남인순 · 이광재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기자동차·연료전지자동차(이하 "친환경자동차"라 함)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자동차의 대여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%를 감면하고, 친환경자동차 중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을 위하여 공급되는 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 있음.

위 특례들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, 환경보호 등의 공익 증진뿐 아니라 친환경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등을 통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당 특례들은 지속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친환경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친환경 버스에

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제7조제3항 및 제106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0년 12월 31일"을 "2023년 12월 3 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5호, 제9호의2"를 "제5호" 로, "적용한다"를 "적용하며, 제9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제7조(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		
감면) ①·② (생 략)	감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중소기업이 「여객자동차	③		
운수사업법」 제31조제1항에			
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			
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			
자동차 중에서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			
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			
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<u>20</u>	<u>20</u>		
<u>20년 12월 31일</u> 까지 해당 자동	<u>23년 12월 31일</u>		
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			
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			
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			
(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			
액을 한도로 한다)을 감면한다.	<u>.</u>	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		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①		
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			
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			
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			

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
1.	\sim	12.	(생	략)
_ .		14.	\ 0	1 /

② ~ ⑤ (생 략)

<u>제5호</u>
작용하며, 제9호의2는
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
것에만 적용한다.
1. ~ 1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혂행과 같음)